

약관변경대비표

1. 약관명 : 『하나 기업어음 특약』
2. 변경 시행일 : 2016년 6월 7일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: 적용
4. 주요 변경내용 : (구)하나은행 약관을 구행명 삭제후 통합약관으로 개정

(구)외환은행 관련 약관 해당사항없음

개정 전(구. 하나은행)	개정 후	비 고
<p>제1조 통장에 의한 거래 ~ 제6조 어음의 부도 (생략)</p> <p>제7조 (사고 등의 신고) 어음거래통장이나 거래인감 또는 매입어음을 분실·도난·멸실 등으로 잃으신 때에는 유선이나 서면으로 가까운 저희은행에 <u>신고하여 주십시오</u>. 이 신고가 있기 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<u>은행이</u> 책임지지 아니합니다.</p>	<p>제1조 통장에 의한 거래 ~ 제6조 어음의 부도 (좌동)</p> <p>제7조 (사고 등의 신고) 어음거래통장이나 거래인감 또는 매입어음을 분실·도난·멸실 등으로 잃으신 때에는 유선이나 서면으로 가까운 저희은행에 <u>신고하여야 합니다</u>. 이 신고가 있기 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<u>은행은</u> 책임지지 아니합니다.</p>	<p>(구.하나은행 특약 준용)</p> <p>(문구 정비)</p>